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, 방법,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·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2.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수련기간) ① ~ ⑤ (생략)	제5조(수련기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: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<u><후단 신설>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, 방법,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
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, 방법,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⑦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 ·

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
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
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
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
2.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
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
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
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